

울산지방법원 2021. 1. 22 선고 2020가단1069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0. 3. 11. 접수 제117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장지혜

별지